

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4. 9. 10.>
등록 제한업종의 예외(제9조의16제2항 관련)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213	생맥주 전문점
56219	기타 주점업